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제품구분	위생용품	처리기간	서류검사 2 일, 현장검사 3 일, 정밀검사 10 일(무균시험대상 20일), 무작위 표본검사 5 일(진균수시험대상 10 일, 무균시험대상 20일)										

수입신고인 (수입화물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업종		영업신고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업종		영업신고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수입신고 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제 품 명					한글명					유형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용도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한글표시 사항 기재내용 제2쪽에 기재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정해
진 제품만 해당한
다)

년

월

일(제조연월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국외제조업소			회사명		

수출업소											회사명				
	소재지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표시 등 그 밖의	세트 포장 여부					예[] 아니오[]									
확인 사항	복합 제품 여부					예[] 아니오[]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No.	성분·재질코드	원료 또는 성분,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재질코드	원료 또는 성분,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첨부서류

- 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
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위생용
품 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야 합니다)
- 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
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관리 등을 위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마.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연구·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유의사항

- 가.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
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료(성분), 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성분),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는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재질명은
인체 또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마. 같은 배 또는 비행기로 같은 입항일에 수입한 같은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바. “수출업소”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 유형 기재란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을 표시하고,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사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 결과 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 내용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중량 (단위: kg)		금액 (단위: US\$)					
	발급													
	번호													
부적합 최종처리 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 번 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한 글 명		순 중 량	(단위: kg)
	화 물 관 리 번 호		과 세 가 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절차

